

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

의안 번호	제395호
의결 년월일	2009. 5. 12. (제152회)

제의년월일 : 2009. 5. 4.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회의장

1. 제안이유

「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부천시 지명위원회」 위원을 추천하기 위함.

2. 「부천시 지명위원회」 위원 추천 대상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 (생년월일)	비 고
위 원	부천시의회	의 원	강동구 (72. 3.15)	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

3. 관계법규 【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(구성)】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